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4. 23 선고 2020가단22351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, C

피 고 D 주식회사

변론 종결 2021. 4. 9

판결 선고 2021. 4. 23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687,358,360원 및 그 중 530,942,000원에 대하여 2018. 7. 1.부터 2020 . 8. 12.까지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갑 제1,2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공주시 E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를 함에 있어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 보증의 담보를 위하여 별지 표와 같이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(이하 '이 사건 보험계약'이라 한다),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는 이를 즉시 변제하되,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,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2018. 6. 30.까지는 연 12% 인 사실,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피보험자 공주시에게, 2015. 11. 3. 순번 1번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 166,582,000원을, 2016. 1. 6. 순번 2번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 364,360,000원을 지급한 사실, 원고가 지급한 위 보험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2018. 6. 30.까지의 약정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156,416,360원(= 순번 1번 보험계약 51,480,682원 + 순번 2번 보험계약 104,935,678원)인 사실이 인정된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687,358,360원(= 166,582,000원 + 364,360,000원 + 156,416,360원) 및 그 중 530,942,000원(= 166,582,000원 + 364,360,000원)에 대하여 2018. 7. 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. 8. 12.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노미정

별지